

등부 2024년 제 1379 호

인 증 서

본 증서는 본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전자 복사해서 촉탁인(대리인)에게 교부하였음을
확인합니다.

2024년 4월 5일

공증인가 평화합동법률사무소

공증담당 변호사 이 선 희



공증인가 평화합동법률사무소

주식회사 하나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발기인총회 의사록

1. 일시 : 2024년 4월 05일 오전 10:00
2. 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9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
3. 출석인원 및 주식수
발기인 총수 1명, 주식 총수 300,000주
출석발기인수 1명, 출석주식총수 300,000주

4. 부의안건 :

- 1) 정관승인의 건
- 2)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
- 3) 대표이사 선임의 건
- 4)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보고의 건

5. 의사경과:

- 단독 발기인 이준구는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,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을 선임할 것을 요구한 바, 단독 발기인 이준구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즉,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- 제1호 의안 : 정관승인의 건



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가한 후 그 승인 여부를 물은 바, 단독 발기인은 이의없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.

- 제2호 의안 :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

의장은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 선임방법을 물은바,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하여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고 피선거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(단, 감사선임은 상법 제409조 2항 규정을 준수하다).

사 내 이 사	이 준 구	(1960년 05월 27일 생)
기타비상무이사	강 지 윤	(1975년 08월 01일 생)
기타비상무이사	이 호 승	(1979년 11월 05일 생)
감 사	김 종 수	(1973년 07월 25일 생)

- 제3호 의안 : 대표이사 선임의 건

의장은 정관 제33조에 따라 초대 대표이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 선임방법을 물은바, 대표이사 선임에 대하여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고 피선거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.

대표이사 이 준 구 (1960년 5월 27일 생)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28, 101동 403호
(논현동, 논현아파트)

- 제4호 의안 :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

의장은 상법 제298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로 하여금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이 정관기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 하는지를 다음 임원으로 하여금 이 조사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자 전원 이에 찬성하였고 선임된 조사보고자도 이를 수락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다.

조사보고자	감 사	김 종 수
	기타비상무이사	강 지 윤
	기타비상무이사	이 호 승

의장은 위 조사보고를 위하여 휴회하였다가 잠시 후 속회를 선언하다.

위 보고자는 이사들을 대표하여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 즉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승인하다.

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를 심의종료 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
(폐회시각 오전10시30분).

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.

2024. 4. 05.

주식회사 하나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의장 및 발기인 이 준 구



조 사 보 고 서

2024년 4월 05일 발기인총회에서 본인들은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상법 제29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 보고함.

1.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보통주식 300,000주로서, 2024년 4월 05일까지 그 전부에 대한 인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.
2.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 300,000주에 대하여 금300,000,000원의 납입금이 2024년 4월 05일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각역기업금융센터에서 발행한 주금납입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된다.
3.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,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, 재산인수에 관한 사항,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나 발기인이 받을 보수 등 상법 제290조에 규정하는 사항은 없다.
4. 기타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인정된다.

2024. 4. 05.

주식회사 하나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기타비상무이사 강 지 윤

기타비상무이사 이 호 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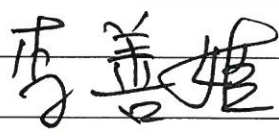
조사보고자 감사 김 종 수



[별지 제37호서식]

등부 2024 년 제 1379 호
인 증
위 주식회사 하나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 _____ 의
2024년 4월 5일자 발기인총회 의사록 _____ 에 대하여
주주 겸 의장 발기인 이준구의 대리인 지영근 _____ 은

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, 기명
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. _____
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
부합함을 확인하였다. _____
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의 대리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그 사람이
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
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. _____
2024년 4월 5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. _____

공증인가 평화합동법률사무소
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0-1
공증담당변호사  
아 래
1. 운전면허증 사본 1부
2.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
3. 진술서 및 확인서 각 1부
4. 주주명부 1부
5. 정관사본 1부